## 장애유형별 분과 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2017. 12. 18. 개 정 2019. 12. 26.

- 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대한장애인육상연맹(이하 "연맹"이라 한다) 규약 제7조(사업) 3. 제 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장애유형별 분과 위원회라 함은 지적장애 분과위원회, 시각장애 분과위원회, 청각장애 분과위원회, 뇌병변장애 분과위원회, 지체장애분과위원회 각 장애유형별 분과 위원회를 말한다며 명칭은 장애유형별 분과 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라 한다.
- 제 2 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적장애 분과위원회, 시각장애 분과위원회, 청각장애분과위원회, 뇌병변장애 분과위원회, 지체장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(기능) 각 장애유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장애유형별 장애인육상 지원·육성
  - 2. 장애유형별 장애인육상 연구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
  - 3. 장애유형별 장애인육상 경기에 관한 사항
  - 4. 장애유형별 장애인육상선수 및 지도자 양성에 관한사항
  - 4. 기타 장애유형별 장애인육상 발전에 필요한 사항
- 제 4 조(구성) ① 각 장애유형별 분과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1. 위 워 장 1인
  - 2. 부위원장 2인
  - 3. 위원 15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  -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- 제 5 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  -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제 6 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 7 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.
  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 8 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  - 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 9 조(회의소집)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- **제10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분과위원회 설치) ①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13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 또는 해당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
- **제14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- 제15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제16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규약에 준한다.

## 부 칙('17. 12. 18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'19. 12. 26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